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888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하동규, 양선화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4. 1.

판결 선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관한 2015. 10. 27.자 증여계약을 60,609,7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609,77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60,609,7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934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17. 'C은 원고에게 31,182,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과 D은 2015. 7. 18. C이 D에게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1아파트'라 한다)를 2억 2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계약일 지급, 중도금 2,500만 원 2015. 9. 2. 지급, 잔금 1억 5,700만 원 2015. 10. 8. 지급)에 매도하되, C이 위 아파트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1아파트에 관하여, 2015. 10. 8. C 명의의 2015. 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D 명의의 2015.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5. 10.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아파트'라 한다)을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7.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사해행위)

C은 이 사건 1아파트의 매도대금 잔금 1억 5,7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 사건 2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이 사건 증여행위로 C의 무자력이 심화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원고의 채권액인 60,609,777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채권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명의신탁)

C이 피고에게 매수자금 1억 1,800만 원을 제공하여 이 사건 2아파트를 매수하게한 것은 피고에게 이 사건 2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위 명의신탁 약정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위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C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60,609,7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증여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1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이 이 사건 2아파트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기존에 살던 빌라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시아주버님인 G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2015. 4. 7. 1,000만 원, 2015. 4. 24. 1,000만 원, 2015. 8. 17. 4,000만 원),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더하여 이 사건 2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위 매수자금 마련경위에 관한 설명이나 제출 자료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C이 이 사건 1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돈은 총 2억 200만 원이다. 위 2억 200만 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C의 채무액 75,096,188원을 제외하여도 126,903,812원이 남는바(원고는 이 사건 1아파트의 매도대금 전부에서가 아니라잔금 1억 5,700만 원에서 채무금 75,096,188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점과 이 사건 2아파트의 매수시점의 간격에 비추어 그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2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1억 1,8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2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령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2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일부 제공한 것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2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이상 유효한데, 원고의 주장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2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1억 1,8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2층 호 50.08㎡부속건물 지하실 호 9.8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 5242.2㎡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5242.2분의 41.20

- 이 상 -